

사법시험준치와 로스쿨 Q & A

Q1. 우리는 세계에서 최단기간에 변호사를 만들어낸다는데 사실인가요?

[표1] 변호사가 되기 위한 최저 기간: 학부 중심제 국가들의 비교

[표2] 변호사가 되기 위한 최저 소요기간: 일본과 한국 로스쿨 비교

Q2. 변호사가 되려면 대학원을 나와야만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Q3. 판,검사가 되려면 대학원을 나와야만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Q4. 우리 나라가 가져온 로스쿨은 어디를 모델로 한 것인가요?

[표3] 한국과 일본의 로스쿨 운용 및 변호사자격부여 비교

[표4] 한국의 기형적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제도의 이해당사자별 유,불리 분석

Q5. 로스쿨이 사법시험보다 공정하지 못하다는데 사실인가요?

Q6. 로스쿨은 장학금 제도가 잘 되어 있어 경제적 약자도 로스쿨을 통해 변호사가 되는데 지장이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Q7. 로스쿨에는 다양한 전공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법조인이 되는 장점이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Q8. 어차피 사법시험도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로스쿨과 큰 차이가 없다는 주장도 있던데 사실인가요?

Q9. 로스쿨 입학정원을 3천명 정도로 늘리면 사법시험이 필요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Q10. 왜 예비시험보다 사법시험이 나은가요?

Q11. 사법시험이 존치되면 로스쿨은 망하나요?

Q1. 우리는 세계에서 최단기간에 변호사를 만들어낸다는데 사실인가요?

예! 사실입니다. 아래 표를 비교해 봐 주세요. 같이 로스쿨을 운영하고 있는 일본과 비교해 봐도 단연 으뜸입니다.

[표1] 변호사가 되기 위한 최저 기간: 학부 중심제 국가들의 비교 1)

	독일	영국	오스트리아	스위스	한국사법시험
학부수업	5년 ²⁾	3년+1년 ³⁾	4년 ⁴⁾	3년 ⁵⁾	4년 ⁶⁾
실무수습	2년 ⁷⁾	2년 ⁸⁾	3년 ⁹⁾	1년 ¹⁰⁾	2년 ¹¹⁾
기타				5년 ¹²⁾	
최저소요기간	7년 ¹³⁾	6년	7년	4-9년	6년 ¹⁴⁾

[표2] 변호사가 되기 위한 최저 소요기간: 일본과 한국 로스쿨 비교 15)

	일본 로스쿨	한국 로스쿨
재학기간	3년 ¹⁶⁾	3년 ¹⁷⁾
실무수습	1년 ¹⁸⁾	6개월 ¹⁹⁾
최저소요기간	4-9년 ²⁰⁾	3년 6개월²¹⁾

- 1) 이호선, 국회 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 '법조인력양성제도개선방안에관한공청회 자료집 (2013. 7.9.)'
- 2) 독일의 학부에서 법학과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4년반에서 5년의 기간이 소요되며, 1차 법률가 시험에 합격하면 졸업이 된다. 합격률은 70% 정도이고, 국가가 부여하는 필수과목 70%, 대학이 재량적으로 부여하는 증점과목 30%로 구성된다.
- 3) 학부에서의 교육을 마치고, 법조인이 되려면 대학에 설치된 유료 법무연수과정 1년을 다녀야 함
- 4) 8학기를 마치고 석사학위 논문을 제출하여 석사학위 취득
- 5) 3년 과정의 법학사를 취득하면 실습자격을 갖게 됨
- 6) 학부졸업 요건은 없으나 통상 8학기 학부 졸업까지는 소요된다고 봄이 상당
- 7) 법관자격(변호사자격)은 1차 시험 합격 후 2년간의 시보 기간을 거쳐 2차시험에 합격해야 주어진다.
- 8) 각 지역별 연수
- 9) 3년의 실습기간을 거쳐 변호사시험에 응시. 9개월 이상은 법원, 2년 이상은 변호사사무실에서 실습을 해야 함.
- 10) 실습이 12개월이나 휴가기간을 제외하므로 실제로는 13-14개월 소요, 이 실습 후 변호사시험 응시
- 11) 사법연수원 실무수습 및 수료
- 12) 전문변호사가 되기 위하여는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변호사활동을 해야 함
- 13) 학부과정, 심보, 시험결과 대기과정을 합하면 최소한 7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 14) 실제로는 통상 대학졸업 후 2-3년 후에 합격한다고 보면 될 것이고, 이렇게 보면 8-9년이 소요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15) 이호선, 위 글.
- 16) 로스쿨 3년이지만, 우리의 90학점 보다 이수학점이 3학점 더 많다.
- 17) 현행 법은 1/3이상을 비법학사로 뽑도록 의무화하고, 법학소양측정을 일체 불허하므로 로스쿨에 들어가는 사람의 적어도 1/3은 법학의 아무런 기초가 없어도 된다.

Q2. 변호사가 되려면 대학원을 나와야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렇습니다. 로스쿨은 학부를 졸업하고 진학하는 3년제 전문대학원이기 때문에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로스쿨 독점체제가 남게 되면, 앞으로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로스쿨이라는 대학원을 반드시 가야 합니다. 지금의 사법시험은 일정 점수의 법학 과목 학점만 획득하면 학력과 관계없이 응시하여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것과 대조적이지요.

Q3. 판,검사가 되려면 대학원을 나와야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판, 검사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만을 상대로 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자격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로스쿨 독점 체제 하에서는 로스쿨이라는 대학원 졸업자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에 로스쿨을 가지 않는 한 판사나 검사는 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로스쿨을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엔 우리 변호사시험에 해당하는 신사법시험을 거치지 않고도 일정한 공식경험을 판, 검사 임용의 요건으로 하는 등 개방적인 통로를 두고 있습니다. 또 신사법시험에는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도 예비시험을 합격했다면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문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로스쿨의 독점과 폐쇄성은 우리가 세계적으로 단연 으뜸입니다.

Q4. 우리 나라가 가져온 로스쿨은 어디를 모델로 한 것인가요?

전 세계 주요 국가들 중 로스쿨 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입니다. 일본은 미국의 것을 모방하였고, 우리는 일본의 로스쿨을 거의 베껴 왔습니다. 영미법계 국가의 대표적인 영국도 학부에서 3+1 년 및 실무수습으로 변호사를 배출하지, 굳이 대학원인 로스쿨 가서 변호사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린 일본 것을 베껴 오면서도 로스쿨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불리한 요소들은 모두 제거하고 편한대로, 입맛대로 가져 왔습니다. 짝퉁을 불량하게 모방한 것이지요. 굳이 이름 붙이자면 "일미(日美)잡탕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은 로스쿨 졸업 후 신사법시험을 철저하게 프로를 배출하는 검정자격시험으로 운용하여 실력이 안 되면 합격시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격률이 25%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입학정원의 75%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합격시켜 주도록 사전에 합격률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경

-
- 18) 신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소에서 1년간 체계적인 실무수습을 밟아야 함
 - 19) 법률사무소 등에 취업이 되면 실무수습은 면제되고, 실무수습도 별도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소위 책상만 내 주고, 이름만 걸어주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고 한다.
 - 20) 로스쿨 졸업 후 바로 신사법시험과 연수소 수습후 평가 2회 시험에 합격하면 4년이 되지만, 합격률이 25% 내외에 불과하므로, 실제로 법조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평균 7-8년은 소요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21) 일본과 달리 75% 사전합격을 보장제로 인해 절대 다수의 졸업생들이 졸업하는 해에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우 로스쿨 나와서 바로 판사나 검사 임용이 되지 않지만, 우리는 로스쿨 졸업생 중에서 판사와 검사를 임용하는데, 가장 객관적인 기준이랄 수 있는 변호사시험성적은 비공개로 하고 있어, 누가, 어떤 조건으로 법원과 검찰로 가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아래 표를 보면 국민들에게 능력있는 법조인을 양성, 배출한다기 보다는 어떻게든 제도를 위한 제도를 만들겠다는 일부 소수 집단의 이기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표3] 한국과 일본의 로스쿨 운용 및 변호사자격부여 비교²²⁾

	일본	한국
제도시행과정	통로 확보 후 시공 ²³⁾	시공 후 통로 마련 ²⁴⁾
학부법학인정	- 미수자 3년 - 기수자 2년 단축 ²⁵⁾	15학점(1학기) 이내 재량적 인정 ²⁶⁾
수료요건	- 93학점 이상 - 기수자는 63학점)	90학점
입학시험학소양측정	- 학교별로 시험 허용하여 재량적 선발권 부여. - 법학기수자 실력 측정	법학관련평가하지 못하도록 일률적으로 법률로 금지 ²⁷⁾
법조통로의 폐쇄성	- 판,검사 임용자체의 개방성 - 예비시험합격자에게도 신사 법시험응시허용	- 판,검사는 변호사로 국한 - 변호사시험은 로스쿨출신만 응시 -
자격시험 합격률	- 2012년 25.1% - 2011년 23.5% ²⁸⁾	- 사전합격률 보장제. 75% 이상 의무적으로 합격 - 로스쿨 교수협은 합격률 87% 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
구술시험 유무	있음	없음 ²⁹⁾
시험성적 공개	공개	본인에게도 공개금지, 법에 명시 ³⁰⁾

22) 이호선, 위 글.

23) 2002년 12월에 "사법시험법 및 재판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과 "법과대학원의 교육과 사법시험 등과의 연계 등에 관한 법률안"의 두 법안 공포, 예비시험을 통한 자도 신사법시험에 응시 기회. 학계에서 위 법안 제정에 간여할 당시 이해관계는 있을 수 없었음 (로스쿨 확정 전)

24) 로스쿨 도입 후 비로소 변호사시험법 제정, 그 과정에 객관성 및 종합적 관점 결여. 변호사시험법 제정 특별분과위원회 10명의 구성원 중 학계 몫으로 로스쿨을 유치한 대학의 교수 4명 관여하여 사법시험폐지를 부칙으로 넣음. 집 짓고 난 뒤 내 집으로만 길을 낸 꼴이 되었음.

25) 이렇게 단축받더라도 신사법시험에 기수자들의 합격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6) 실제로 이를 인정받아 한 학기라도 단축하고 있는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음.

27)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23조 (학생선발) ② 법학전문대학원은 지원자의 학사학위과정에서의 성적,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자질에 관한 적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이하 "적성시험"이라 한다)의 결과 및 외국어능력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그 밖에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경력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8) 2010년 25.4%, 2009년 27.64%, 2008년 3%, 2007년 40.2%, 2006년 48.3%였다. 주목할만 한 것은 2012년 예비시험합격자들이 최초로 일본 신사법시험에 응시하여 58명이 최종 합격하였는데, 이를 실제 응시생 대 합격률로 따지면 68.2%나 되어, 최고의 합격률을 낸 대학의 57%보다 높을 뿐 아니라, 로스쿨 출신 평균 합격률 24.6%의 2.8 배나 높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29) 현행 사법시험에는 구술시험이 있음.

	일본	한국
자격시험 응시제한	로스쿨 졸업 후 5년간 3회	로스쿨 졸업 후 5년간 5회
실무수습	- 1년간 사법연수소 실습 - 종래의 사법연수제도 통한 체계적 실무수습	- 6개월의 형식적 실무수습 - 취업하면 실무수습은 없음 - 개인법률사무소 등에서도 가능
실무수습평가	- 수습 후 평가시험 - 탈락자 있음	- 없음 - 6개월 경과로 자동자격 부여

[표4] 한국의 기형적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제도의 이해당사자별 유,불리 분석³¹⁾

	로스쿨	국민	법률소비자	관료	학생(1)	학생(2)
법학사 불인정	유리	불리	불리	중립	불리	불리
법학소양 불측정	유리	불리	불리	중립	유리	불리 ³²⁾
법조통로의 폐쇄적 운용	매우유리	매우불리	불리	유리	유리	유리
시험합격을 사전보장제	매우유리	불리	매우불리	유리	매우유리	매우유리
구술시험 미실시	유리	불리	매우불리	유리	유리	유리
시험성적 비공개	매우유리	불리	매우불리	매우유리	유리	불리 ³³⁾
실무수습 6개월	유리	불리	매우불리	중립	유리	유리
실무수습 후 평가부재	유리	불리	매우불리	유리	유리	불리 ³⁴⁾

30) 변호사시험법 제18조(시험정보의 비공개) ① 시험의 성적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을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31) 이호선, 위 글.

32) 로스쿨 입학하려는 학생들 중에는 소위 비명문 학부이지만, 일정한 정도의 법학 소양 능력을 갖고 이를 검증받아 학벌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기에, 이들의 경우에는 법학소양능력을 측정하지 않는 제도가 확실하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며, 소위 비명문, 지방대 학생들이 그러할 것임.

33) 현행 변호사시험성적 비공개는 유일한 객관적 잣대를 숨김으로 인하여 학부 서열의 고착화와 집안의 사회, 경제적, 인적 네트워크가 더 작용하도록 하여, 여기에서 소외된 로스쿨 졸업생들의 경우 공정한 검증의 기회를 아예 상실하게 된다.

34) 실무수습 과정에서 드러난 실력의 객관적 우열을 가리는 기회를 놓치게 되어, 비명문의 한미한 집안의 자녀들의 경우엔 일본의 경우처럼 2회 시험이 없다는 점이 결코 유리한 건 아니다.

Q5. 로스쿨이 사법시험보다 공정하지 못하다는데 사실인가요?

로스쿨 독점체제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과거에 사법시험 합격자를 배출하지 못했던 대학들에서도 로스쿨에 진학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지역의 로스쿨을 진학했느냐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법시험 합격자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 지방대학들의 졸업자들이 수도권 로스쿨에 진학하는 비율은 훨씬 못 미칩니다. 아예 비명문대, 지방대 출신은 몇 해 동안 뽑지 않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걸 로스쿨 입학에 국한된 이야기입니다. 로스쿨 졸업과 판검사 임용은 더 중요합니다. 진정한 기회균등은 합격률 75%가 보장되어 있는 변호사시험을 거쳐 변호사가 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스쿨 체제 하에서 임용되는 판사와 검사들의 학벌이 사법시험 체제 하의 그것보다 더 몇몇 주요 대학으로 쏠려 있다는 것은 몇 가지 인터넷 기사 검색을 해 보면 객관적인 데이터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 불공정성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는 로스쿨 독점체제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Q6. 로스쿨은 장학금 제도가 잘 되어 있어 경제적 약자도 로스쿨을 통해 변호사가 되는데 지장이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로스쿨에 가기 위해서는 대학 졸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제적 약자라고 해도 최소한 4년제 대학을 졸업할만한 경제적 능력은 있어야 하는 약자입니다. 또 실제로 로스쿨에서 선발의 기준으로 소위 명문학부 출신 여부임을 중시하는 관행을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경제적 약자는 엄격히 말하면 "명문 학부를 졸업할 정도는 되어야 하는 경제적 약자"를 말합니다. 이런 배려(?)를 요행수로 노려 로스쿨 진학을 꿈꿀 진짜 가난한 집안의 청년들이 얼마나 될까요? 꿈의 격차, 심리적 격차는 원천적으로 해소되지 못합니다. 또 중산층이라고 해서 모두 로스쿨을 마음놓고 보낼 수 있는 처지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립대 기준으로 등록금과 생활비 합하여 3년간 1억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로스쿨은 웬만한 중산층 가정에게도 버겁고 힘듭니다. 실제로 지금 로스쿨 재학생들이 받고 있는 1인당 학자금 대출 규모는 여타 전공, 대학원에 비해 가장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Q7. 로스쿨에는 다양한 전공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법조인이 되는 장점이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원래 로스쿨 도입 취지는 다양한 전공과 사회적 경험을 가진 사람들에게 법조인이 되는 기회를 주어 법학 교과서에 매몰되어 시험 기계처럼 되어 버리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입 취지와 달리 지금 로스쿨 입학은 사회적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4년제 학부를 졸업하고 바로 진학하는 과정으로 대부분 여겨져 응시평균연령이 사법시험 합격자 평균연령보다도 낮은 처지에 있습니다. 사법시험의 경우 매년 1천명을 선발할 때는 25-30 퍼센트 이상 비법학전공자들이 합격하였습니다. 이들이 다양성을 확보하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 법률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국내의 대형 로펌들과 각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변호사들은 사법시험 출신이었습니다. 다양성은 법조인이 된 다음 실무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쌓는 것이지, 학부 4년 어떤 전공으로 졸업했다고 해서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로스쿨의 다양성 주장은 사법시험에 비해 전혀 비교우위에 있지 않습니다.

Q8. 어차피 사법시험도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로스쿨과 큰 차이가 없다는 주장도 있던데 사실인가요?

로스쿨 독점주의자들이 하는 근거 없는 말입니다. 사법시험 준비도 학원 다니고, 책 사 봐야 하고, 시험기간 동안 먹고 사는 비용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비용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시험에 합격하는 기간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또 사시 준비에 들어가는 돈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고시원 충무를 하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스쿨 학비는 학생의 경우 집안에 손 벌리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고, 집안이 능력이 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꿈을 접어야 합니다. 더구나 요즘은 로스쿨에서조차 변호사시험 등을 대비한 동영상 강의 등을 수강한다고 합니다. 이중 삼중의 고정 비용이 들어가는 구조가 되어 버린 로스쿨과 사법시험을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억지에 다름 아닙니다.

Q9. 로스쿨 입학정원을 3천명 정도로 늘리면 사법시험이 필요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기존 로스쿨은 물론 로스쿨을 유치하지 못한 대학에서도 로스쿨 입학 총 정원을 늘이거나, 아예 준칙주의로 가서 일정한 물적, 인적 설비를 갖춘 대학들에게는 원하는 대로 로스쿨을 만들도록 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런 주장으로는 앞에서 이야기한 대학원으로서의 로스쿨이 갖고 있는 한계, 고비용과 시간이 법조 시장 진입에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국내 모든 대학이 로스쿨을 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왜 굳이 대학원가서 변호사가 되어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할까요? 그렇게 할 바에야 학부 4년에 1-2년을 더 공부시켜 모두에게 변호사 자격을 주고, 판사와 검사는 임용시험을 거쳐 선발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Q10. 왜 예비시험보다 사법시험이 나은가요?

예비시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시험은 차선이 될 수는 있어도 최선은 아닙니다. 일본식으로 예비시험을 운용하면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한 사람들이 예비시험을 통해 다시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맙니다. 예비시험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으로 하게 되면, 변호사시험에서 요구하는 기록식 시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시험 합격자들은 다시 학원으로 몰려가고, 사교육에 의존하게 됩니다. 대학에서 기록식 시험을 대비하여 교과과정을 개편한다면 이는 비로스쿨이나 로스쿨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될 것이기에, 바로 로스쿨 무용론이 나오게 됩니다. 법학이라는 학문도 고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비시험이 그나마 차선이라도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예비시험 합격자는 변호사시험이 아닌 다른 방법(예컨대, 변호사 연수원에서의 1-2년 연수)으로 변호사 자격을 주어야 하고, 이 시험에 로스쿨 졸업생이나 재학생은 이중 응시가 될 수 없도록 금지하며, 예비시험을 통해 변호사가 된 사람에게는 로스쿨 졸업자와 동등한 정도의 쿼터제로 판, 검사를 임용해야 합니다.

Q11. 사법시험이 존치되면 로스쿨은 망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법시험은 오히려 로스쿨 체제를 건강하게 안착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사법시험 존치를 논할 때 전체적인 배출 구조는 사법시험 500명, 로스쿨 1,500명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지금 로스쿨들 중에서는 정원을 100명 이하, 심지어 40명 정도로 받아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학교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학부체제로 돌아오고 싶어도 탈출구가 없습니다. 적자에 허덕이지만 그나마 변호사를 배출한다는 명분이라도 있어 그걸 간신히 붙잡고 있지만, 학부 체제에서도 변호사를 배출하고, 졸업생들을 법조 공직에 진출시킬 통로가 보장된다면 이들은 기꺼이 돌아올 것입니다. 자발적인 구조조정으로 정원 150명 정도 규모의 로스쿨 10개가 되면, 재정난도 해결되어 로스쿨 재학생의 등록금 부담도 경감되고, 전문적인 교육도 가능해 집니다. 사법시험 존치는 로스쿨과의 건전한 공생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